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발송 No. 2021. 07. 08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
수 신	전 회원사 대표이사 [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]
참 조	매립시설 관리담당
제 목	「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」 관련 추가 의견제출 요청[긴급]

1. 한매협 2021-28호[「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」 관련 의견제출 요청, '21.6.8]와 관련입니다.

2. 환경부에서 제시한 "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(안)"과 관련하여 실무자회의 및 회원사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출한 협회 건의의견을 환경부에서 일부 반영하여 수정(안)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긴급하게 매립업계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시 한 번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건의의견을 '21.7.9(금) 오전까지 (FAX : 02-718-7171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1.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수정(안) 1부.
2.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. 끝.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

대 리 김정훈 기술지원팀장 한인성 상 무 장기석 부회장 김상배 회 장 강경진
협조자
시 행 한매협 2021 - 35호 (2021. 7. 8) 접수
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iwla.or.kr
전 화 02-718-7900 전 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붙 임 1

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수정(안)

항목	연구용역 결과(안)	전문가 회의 논의(안)	전문가 회의 의견 반영 수정(안)
침출수	① 침출수 원수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3년 연속 만족할 것	① 침출수 원수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3년 연속 만족할 것	① 침출수 원수 수질이 배출허용기준*을 3년 연속 만족할 것 * 별표 11 제2호나목2)가)
	- 단, 침출수가 미발생된 경우에는 매립폐기물을 용출시험하여 나온 용출액의 수질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	- 단, 침출수가 미발생된 경우에는 매립폐기물을 용출시험하여 나온 용출액의 수질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☞ (과학원, 환경공단, 이남훈) 침출수배제관 막힘, 매립폐기물 성상 등으로 인해 침출수를 채취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 필요	- 단, 침출수를 채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립폐기물을 용출시험하여 나온 용출액의 수질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
	② 차수시설 상부 침출수의 수위는 30cm 이하일 것 ※ 별표 9 제2호나목2)자)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측정 장치 기준	② 차수시설 상부 침출수의 수위는 3년 연속 30cm 이하일 것 ※ 별표 9 제2호나목2)자)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측정 장치 기준 ☞ (환경공단, 수도권매립지공사, 대전시)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 (과학원) 2m 범위에서 상향 필요	② 사후관리가 종료된 후에도 침출수 수위 기준*(2m)을 만족할 수 있을 것 * 별표19 제3호나목3) ※ 별표 9 제2호나목2)자)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측정 장치 기준 **(협회입장) 침출수 수위 유지기간 또는 미발생 판단에 대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**

항목	연구용역 결과(안)	전문가 회의 논의(안)	전문가 회의 의견 반영 수정(안)
매립가스	① 매립가스 중 CH_4 농도가 5% 이하로서 3년 연속 증가하지 않을 것 ※ 매립가스 발생량 및 CH4 농도는 별표 11 제2호나목2)카)에 따라 설치된 가스배제관에서 측정	① 매립가스 중 CH_4 농도가 5% 이하로서 매립가스 발생량이 3년 연속 증가하지 않을 것 ※ 매립가스 발생량 및 CH4 농도는 별표 11 제2호나목2)카)에 따라 설치된 가스배제관에서 측정 ☞ (과학원, 대전시) 사후관리 시 매립가스 발생량은 현행 측정 의무가 없어 확인이 곤란하므로 제외 필요	① 매립가스 중 CH_4 농도가 3년 연속 5% 이하일 것 ※ CH4 농도는 별표 11 제2호나목2)카)에 따라 설치된 가스배제관에서 측정
주변환경 영향	① 별표 19제3호다목, 라목, 아목에 따라 조사한 지하수(해수) 및 지표수 수질조사와 토양의 오염도 조사 결과 매립지로 인한 오염징후가 없을 것	① 별표 19제3호다목, 라목, 아목에 따라 조사한 지하수(해수) 및 지표수 수질조사와 토양의 오염도 조사 결과 매립지로 인한 오염징후가 없을 것	① 별표 19제3호다목, 라목, 아목에 따라 조사한 지하수(해수) 및 지표수 수질조사와 토양의 오염도 조사 결과 매립지로 인한 오염징후가 없을 것
		- 주변지역 수질조사 결과 침출수 누출 징후가 없거나,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	- 주변지역 수질조사 결과 침출수 누출 징후가 없거나,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

항목	연구용역 결과(안)	전문가 회의 논의(안)	전문가 회의 의견 반영 수정(안)
구조물 및 지반안정도	① 별표 9 제2호가목3)의 기준에 따라 안전율 기준을 충족하며, 축대벽 및 둑 등 구조물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않아야 할 것	① 별표 9 제2호가목3)의 기준에 따라 안전율 기준을 충족하며, 축대벽 및 둑 등 구조물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않아야 할 것	① 별표 9 제2호가목3)의 기준에 따라 안전율 기준을 충족하며, 축대벽 및 둑 등 구조물에서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않아야 할 것
	② 별표 11 제2호나목2)차)의 (5)에 따라 설치된 최종복토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	② 별표 11 제2호나목2)차)의 (5)에 따라 설치된 최종복토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	② 별표 11 제2호나목2)차)의 (5)에 따라 설치된 최종복토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
		- 최종복토층이 침하현상으로 인한 손상 또는 빗물 등으로 인한 침식현상 없이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상기능을 유지할 것	- 최종복토층이 침하현상, 빗물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침식되지 않고,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을 것

붙 임 2

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(안)에 대한 건의의견

환경부(안)	수정 건의(안)	사 유

2021. 7. .

업 체 명 :

대 표 자 : (인)

담 당 자 :

한 국 산 업 폐 기 물 매 립 협 회 귀중